

# 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 개선 토론회

2009년 7월 10일(금) 14:00~17:00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세부일정 P·r·o·g·r·a·m

▶ 사회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14:00~14:10 인사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14:10~14:30 미술장식 개념 정비 및 의무이행 다양화 방안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4:30~14:50 미술장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14:50~15:10 공공미술 출연 기금 운영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15:10~15:20 휴식

15:20~16:20 종합토론

# 목 차 C·o·n·t·e·n·t·s

미술장식 개념 정비 및 의무이행 다양화 방안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5
미술장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15
공공미술 출연 기금 운영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31



미술장식 개념 정비 및 의무이행  
다양화 방안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1. 문화예술진흥 VS. 경제규제개혁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정안을 논하기 전에 이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누가 이 제도를 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 정부에서 개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논란 속에 무산되었다. 정부가 바뀌고 당시 개정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대거 물갈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미술장식제도 개정안을 논의하는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개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문화계 내부의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문화계 내부가 아니라 경제계에서 그 요구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1997년에 있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가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된 것은 1995년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의무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지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채 2년도 되지 않은 1997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은 이 제도가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건축 규제라고 보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적용을 대폭 완화할 것을 문화부에 요청하였다. 규제개혁의 사유는 세 가지였다. 미술장식제도를 민간건축물에까지 의무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담합과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치는 미술장식품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규제개혁작업단의 의사는 미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 건축물 미술장식비용을 건축비의 1%이상에서 1%이하로 낮추는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미술장식비용은 0.7% 대에 머물고 있다.

미술장식제도가 완화된 1997년부터 2000년은 경제가 어려웠던 IMF 시기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혁 작

업이 힘을 받게 된다. 현재 미술장식제도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개혁 드라이브의 사유는 1997년 당시와 거의 다르지 않다. 돈을 내야하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들도 이 제도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미술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0.7%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 제도에 대한 건축계의 요구는 0.7%도 부담스럽다, 폐지하거나 0.3% 정도로 대폭 낮추어달라는 것이다.

## 2. 민간건축물에 대한 의무적용의 정당성

필자는 1997년 문화부로부터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규제개혁작업단의 요청을 반영하여 미술장식비용을 1%이상에서 1%이하로 낮추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해외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점점 이 제도를 옹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는 거의 전적으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건설에만 적용되고 있었고 민간건축물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제도는 있지만 그때 건축물은 모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건물이었기 때문이다.

민간건축물에 이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선진국에 없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1%이하가 아니라 폐지해야한다고 해도 말을 못할 지경이었다. 특히 1997년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료로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 백방으로 찾던 중에 드디어 민간건축물에 대해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로스앤젤레스 사례였다. 로스앤젤레스 사례는 미술계 일각에서는 선택적 기금제를 뒷받침하는 미술계에 아주 불리한 사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로스앤젤레스 사례야말로 당시 갖은 노력 끝에 찾아낸 유일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의무적용 사례였다.

로스앤젤레스시가 민간건축물에 미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도시의 특정지구를 미술을 통해 보다 예술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때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 사례는 미국국립예술

진흥기금(NEA)이 발간한 <Going Public>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최초로 민간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한 곳으로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향후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구도심, 낙후지역 등을 재개발하는 경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며, 덕분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다수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미국과 캐나다에서 민간건축물에 대해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킹 카운티 공공미술 프로그램(King County Public Art Program)이 발간한 <공공미술과 민간개발(Public Art & Private Development)>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50개 이상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 공공미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의무화할 경우 의무이행방법은 어떠한지 -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지, 아니면 공공미술기금으로 납부하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개가 넘는 공공미술 프로그램 중에서 26개의 프로그램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정책을 갖고 있었다. 이중에서 19개는 의무사항이고, 7개는 권장사항이었다. 저자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의 의무적용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건설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념을 민간 개발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발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작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 퍼센트를 문화신탁(cultural trust) 또는 공공미술기금(public art fund)에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은 일정 퍼센트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나머지는 공공미술기금에 분할하여 쓰도록 하고 있다.
- 직접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신탁이나 공공미술기금에 납부할 경우, 직접 작품을 설치할 때 효율과 동일하게 1% 전부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부터, 샌디에고시처럼 원래 1%인데 기금으로 낼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0.5%만 내도록 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 작품도 설치하고 기금도 납부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데, 대개 1% 중 30~40%는 기금으로 내고, 60~70%는 직접 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의무적용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건축 허가 과정 시 미술을 위한 퍼센트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 허가 전에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개발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지비용을 낮춰주거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다른 인센티브와 결합하는 것이 좋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민간건축물에 대해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보다 낮은 비율의 의무를 부여하거나, 같은 비율의 의무를 갖게 하더라도 의무이행 방식에 있어서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3. 선택적 기금제

미국 및 캐나다의 사례와 유사한 선택적 기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2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 서성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바 있다.<sup>1)</sup> 여기에서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되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국내외 사례들을 감안할 때, 미술장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건축주와 민간건축주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적용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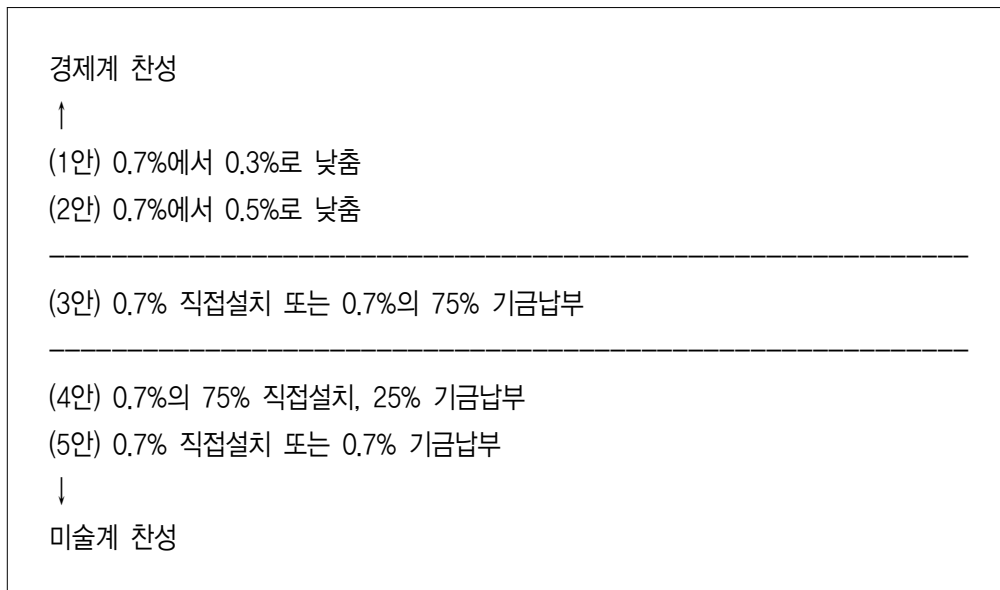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의무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요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고 이것이 경제계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요율은 낮추지 않되 의무이행 방법의 하나로서 직접 설치하는 대신 기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

1) 서성록, 미술장식제도, 문제와 대책,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요율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요율을 약간 낮추는 경우, 일부는 직접설치를 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1안과 2안은 미술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다. 반면 일단 4안과 5안은 0.7% 요율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그다지 개선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중에서는 3안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안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선택적 기금제 도입시 무슨 기준으로 요율을 낮춰 적용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미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에서 비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제작비용, 행정비용, 유지관리비용이다. 1%를 100으로 볼 때, 25% 정도가 행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75% 정도가 작품제작비이며, 아티스트 피(artist fee)와 재료비로 구성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0.7% 중에서 행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는 25%를 제외한 75%를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공미술기금을 조성된 비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담부서를 두어 공모지원사업으로 공정하게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전제로 할 때 산출된 수치이다.

그러나 선택적 기금제는 경제계와 미술계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것일 수 있다. 우선 경제계에서는 0.7%의 75% 기금납부로는 규제완화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금납부시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라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면효과를 보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

내국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경우에는 개인은 기준금액의 100%,  
법인은 기준금액의 50% 한도 적용

미술계에서는 0.7%의 75%를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0.7%로 직접설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민간건축주가 기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요율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미술품 투자가 새로운 자산증식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미술시장이 활성화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고 작품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미술투자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즘 고급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미술장식제도는 문화마케팅의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금납부를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주가 기금납부한 건수만큼 0.7%의 25%의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미술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문예진흥기금을 이관할 때 1:1 매칭펀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납부로 모인 공공미술기금을 지역문화재단의 공공미술 공모지원사업 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매칭을 받는다면, 오히려 미술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건축주에게는 일정정도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미술가에게는 필요한 공공지원을 더 늘릴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효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4. 미술장식 개념 정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와 같이 민간건축물 중심으로 적용되는 미술장식제도는 정당성에 대한 도전에 휘말리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민간건축주와 공공건축주로 적용대상을 분리하면서 제도 자체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듯이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미술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 외에 공원, 광장, 거리 등 도시 전체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술장식 개념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는 미술계 누구나 공감하는 바였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적합한 용어를 찾지 못해 그동안 진통을 겪어 왔다. 이유는 공공미술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원, 광장 등에 조성되는 미술작품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미술이 서구 현대미술에서는 매우 평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색깔 논쟁에 휘말려 있다는 점 때문이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의 공공조형물이라는 용어에 비해 훨씬 쉬우면서도 그 자체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장소에서 공공미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원, 광장, 가로 등은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건축물보다 더 이 제도가 본래 목적으로 삼았던 취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서울 청계천 광장과 일산 호수공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미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문화적 인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원, 광장, 녹지 등의 조성에 있어 지자체가 조성비용의 일정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여가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트인시티 사업 이후에는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일회성 사업을 만들기보다 이러한 공간시설의 일정 비율을 미술품 설치에 사용한다면

일상의 생활공간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장소에 대한 설치를 의무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모든 공공장소에 공공미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자칫 획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제도 활용을 권장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매칭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하여 미술장식 제도를 고찰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개별 건물 단위의 미술작품 설치가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구도시를 재개발할 경우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이나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 작품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 전체 차원에서 훨씬 더 예술적인 환경을 창출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라 빌레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일본 파레 다치카와 등은 도시계획과 미술이 결합한 사례들이다. 아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의 틀만 너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미술을 신도시 개발이나 도시재개발과 결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여겨진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인식의 확대는 문화부의 관리소관으로 있는 문화지구에서는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전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지구는 현재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만을 의미했는데,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해 공공미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공공디자인과 공공미술의 장점이 서로 결합하여 문화지구를 조성해 나간다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명칭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문화지구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공공시설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를 아우르는 것으로 공공미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미술을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술적 정의가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의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공공미술이란 건축물, 공공시설, 문화지구 등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 미술장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 1. 미술향수의 촉진

우리나라에 미술시설이 확충된 것은 2천년대 이후부터인 것 같다.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81.8%, 대안공간 69.2%, 문예회관 41%, 미술관 45.5%로 주로 2001년 이후에 건립되었다.<sup>2)</sup>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향수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07년에 행해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얼마나 미술전시회를 가봤냐는 질문에 평균 0.2회라는 통계가 나왔다.<sup>3)</sup> 평균 천 명 중에 두 명 꼴로 전시장에 들렀다는 얘기다. 2003년과 2006년에도 똑같이 0.2회가 나왔으니까 미술 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와 같은 굵직한 국제전이 즐비한 것에 비해 좀 의외의 결과다. 전시내용이 일반의 정서와 동떨어진 탓도 있지만 왜 그런 저조한 관람횟수가 나왔는지 생각해보니 기본적으로 미술 관람은 미술관이나 화랑까지 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이용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미술관람을 촉진한 하나의 사례를 떠올린다면 미술전람회를 아예 바깥으로 옮겨 누구나 감상할 수 있게 한 방안이 생각난다. 이 프로그램은 몇 년간 중단되고 있지만 정부는 1997년부터 조각공원 조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sup>4)</sup> 필자도 안동 조각공원 조성을 도왔는데 지역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화랑도, 미술관도 없는 낙후된 지역에 조각공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조각품을 즐기며 감상하고 또한 유치원,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 또는 미술학습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코스,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 장소로, 관광객들에게는 한번쯤 거쳐 가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물론 입장료를 낼 필요도 없고 미술관처럼 입을 다물고 조용조용 걸어갈 필요도 없다. 가벼운 옷차림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면서 미술도 얼마든지

2) 『2006시각예술 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 김달진 미술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p.77

3) 『2008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소, 2008

4) 1997년 1개소(전남보성), 1999년 5개소(강원 설악, 경북 안동, 충북 충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2000년 11개소(부산 남구, 경북 김천, 경기 이천, 경기김포, 경기 안산, 강원 동해,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북 임실, 전남 영암, 전남 해남), 2001년 10개소(대전 중구, 광주 동구, 경북 영덕, 경남 남해 등), 2002년 7개소(부산 남구, 광주 광산, 원주, 천안, 임실, 나주, 경남 도림미술관), 2003년 8개소(부산 서구, 제천, 청원, 익산, 무주, 정읍, 담양, 마산)

지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깨닫는다. 미술의 대중화를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을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미술장식품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누구나 손쉽게 미술품을 접하는데 공공조형물만큼 알맞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 아름다움, 다층화된 여가생활과 같은 삶의 여유를 누리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한층 견고히 할 수 있다. 집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꼭 영화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듯이 거주지 인근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 꼭 미술관에 와야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화랑과 미술관을 찾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시장에 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집 근처에서, 직장근처에서, 도심이나 도시 외곽 어떤 곳이든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우리가 미술장식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공공미술만큼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미술장식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먼저는 공공미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알아보고, 미술장식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대행사의 정상화 방안, 미술작품 사후관리 문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도개선의 문제 등을 하나씩 검토해보려고 한다.

## 2.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2005년 미국 포트랜드시와 멀트노마 카운티는 좀 특별한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다. “미술퍼센트 25주년 기념 축제” 라는 행사이다. 지역예술 및 문화 위원회(RACC)는 ‘미술퍼센트법’ (% for art ordinance)이 시행된 지 25주년을 맞아 그간 설치한 5백여점의 미술품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그들은 공공미술 산책을 위한 브로슈어 발간,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제공, 퍼센트법 기념전 개최를 펼쳤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포트랜드시와 멀트노마 카운티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퍼센트법을 1%에서 1.33%로 인상하였다. 1%를 작가의 작품제작비로 돌려주고 나머지 0.33%는 관리 및 유지비용로 쓰기위해서다. 5)

사실 우리나라의 미술장식제도를 제정할 때 미국 연방시설청(GSA)의 ‘건축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름도 ‘미술장식’으로 되어 있다. GSA의 법안은 1962년 “연방건축의 원리”라는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신축하는 연방건축의 디자인에는 생존하는 미국 미술가들의 작품을 강조하도록 미술을 포함시킨다”<sup>6)</sup>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을 지을 때 미술품설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미술 퍼센트법으로 이 프로그램이 미국 공공미술의 설치에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미국의 미술장식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을 보면, 1퍼센트가 73%, 1퍼센트 이상이 11%, 1퍼센트 이하가 15%, 기타 1%로 되어 있다. 포트랜드뿐만 아니라 산호세(2%), 보이시(1.4%), 브로워드카운티(2%), 사크라멘토(2%), 샌프란시스코(2%) 등이 채택하고 있다. 처음에는 낮게 시작했다가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는 중이다.

‘공공미술’(public art)은 ‘갤러리 미술’(gallery art)과는 다르다. ‘갤러리 미술’이 사유공간에서 일부 미술애호가들을 위해 전시되는 것이라면, 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공공 장소에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좀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적 수혜를 나누어줄 수 있으며 갤러리 미술에 비해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도 훨씬 크다. 그 의미를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조차 예술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미술장식은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보다는 민간건축주에게 공공미술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다. 국민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제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소극적인데 대다수 국민이 얼마나 자진해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 공공미술에 관한 역할을 사뭇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미국과 사뭇 대조가 된다.

GSA가 처음 미술 퍼센트법을 만들 당시 “미술과 정부”(Art and Government)라는 보고서에서 조각장식 혹은 벽화장식을 위해 1.5%를 할애할 것을 주문하였다.<sup>7)</sup> 처음부터 공공미술에 대한 정책을 시작할 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건설적인 연방정부의 안에 전미의 주와 시, 카운티가 보조를 같이 하였다. 1959년 필라델피아가 건축

5) 포트랜드 멀트노마 카운티 지역예술 및 문화 위원회(Regional Arts & Culture Council) 홈페이지 [http://www.racc.org/publicart/\\_PublicArt25Anniversary](http://www.racc.org/publicart/_PublicArt25Anniversary)

6) Harriet F.Senie, Contemporary Public Sculpture,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218

7) John Wetenhall, “A Brief History for Percent-for-Art in America,” in Public Art Review, fall/winter 1993

물에 미술 비용을 추가하는 법을 미국역사상 최초로 통과시켜 이 법을 성문화시키는 최초의 시가 되었고, 50년대 후반에는 이례적으로 필라델피아 재개발청의 정책이다 미술에 할당하는 비용이 1% 이하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후 미술 퍼센트법은 탄력을 받아서 볼티모어에서도 통과되었다. 여기서 미술가조합(Artist Equity)이 나서서 볼티모어 시당국을 설득시켰다. 이때 시당국의 반응이 의외였는데 도널드 쉐퍼(Donald Schaefer)(훗날 볼티모어의 시장 및 메릴랜드의 주지사가 된다)는 미술이 활기찬 도시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냉랭한 건물을 활기있게 만드는 것은 조각, 회화, 모자이크, 분수 등등이다. 주민들이 도시 속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적합한 장소로 바꾸어야 한다.”<sup>8)</sup>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와 그 밖의 여러 주와 도시가 1967년에 미술 퍼센트법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들였고 워싱턴은 1974년에, 그 뒤로도 여러 시와 카운티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이 법을 시행하였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미술 퍼센트법의 근간을 지켜왔다. 오히려 이 법을 더 강화하고 미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계의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연방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미술의 사회적 기여도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한번 정한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1969년 에드먼드 머스키(Edmund Muskie) 상원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연방의 미술 및 건축법” (Federal Fine Arts and Architecture Act)에서 연방 건축물들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창의적이고 게다가 아름다움을 결여하고 있다며 연방건물을 최고의 예술품으로 꾸미자는 안을 제출하였다.<sup>9)</sup> 바우하우스가 올드 스타일 대신 모던한 예술을 건축에 접목시켰듯이 머스키법은 보자르 스타일에 젖어있던 미국 건축물에 현대미술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정부의 출연금을 1%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문화향유, 문화복지 등을 강조하면서 민간에게 공공미술의 책임을 미뤄둘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양질의 삶과 수준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공공조형물만치 효과가 있는 것도 없다.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물질적 가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면,

---

8) 같은 글

9) 같은 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현대에서는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정신적 빈곤’에 관심을 기울여 문화와 예술활동을 통한 타개책을 검토해볼만하다.<sup>10)</sup>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현행 미술장식품 개정안은 종래의 1%에서 하향된 것으로 정부의 요율도 함께 경감되었다. 민간의 요율이 인하된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부담감을 진 정부의 요율이 덩달아 낮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출연비중을 낮춤으로써 ‘퍼센트법’의 취지도 모호해졌다. 낮은 경비로 ‘뛰어난 예술품’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발상이다. 미술장식제도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낳는다. 예술에는 경제적 가치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 문화예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지 부유해져서가 아니라 인간의 정서적 및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배려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또한 예술이 후대에게 돈으로 환전할 수 없는 정신 자산이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술장식 제도의 개정안에서는 종래의 단순한 미술장식제도에서 공공미술제도로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고, 출연비중을 1% 이상으로 높여 정부의 부담 및 역할도 증가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나라가 예술문화를 시민에게 보급하고 양질의 삶을 누리게 할 역할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3. 대행사 등록제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현황(2004년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미술장식품규모는 총 712억원, 2004년은 총 699억원에 이른다.<sup>11)</sup> 그 이후의 액수는 파악치 못했지만 적어도 700억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2008년부터는 갑작스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상당 폭 감소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어쨌든 미술장식품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임을 알 수 있다.

10) 김경욱, “공공미술의 다양한 혜택들”,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문화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교육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11.16. 김경욱에 의하면, 공공미술은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형성, 사회적 및 지역적 관심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증가, 인간의 권리강화, 레저와 여가선택의 다양화,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의 증가, 개인과 그룹의 사회적 격리의 경감 등을 가져온다고 한다.

11) 김갑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방안”, 2005

대행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놓칠 리 없다. 대행사들은 기존 화랑에서 미술장식품을 취급하는 곳과 에이전트들로 나누어진다. 화랑의 경우는 좀 나은 편이지만 일부 에이전트들의 경우 건축주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과당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하고 그 책임을 작가에게 전가시킨다. 가령 1억에 수주를 받았다면 실제 금액은 8천만원이고 대행사가 알선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취하고 작가에게 5천만원만을 분배한다. 이런 경우 작가는 실제 작품제작비로 3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세금과 아티스트 피(fee)로 사용하게 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형적으로는 1억짜리를 제작하는 데 불과 3천만원 정도만 재료비로 들어간 미술품을 설치하게 되는 격이다. 얘기를 정리해보면,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제작비가 엉뚱한 데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대행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되고 만 셈이다. 물론 모든 대행사가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대행사 중에는 양심적으로 작가를 지원하며 좋은 파트너십을 갖는 곳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대행사는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위 ‘브로커’로 불리는 일부 대행사들의 얘기다. 그들에게는 미술장식제도가 한낱 장사수단에 불과하다.

낮은 수준의 작품설치는 일부 건축주의 알뜰한 상흔, 그리고 대행사의 과잉 이윤추구 문제와 맞물려 있다. 작가와 주민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거꾸로 대행사를 위한 제도인 것처럼 변질되고 만 셈이다. 물론 대행사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조형물의 규모가 커지고 수속절차도 복잡해지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구비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부득불 대행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흔하다. 여기서도 그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행사의 영리추구를 문제삼을 것이다. 몇몇 작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행사의 입김이 클수록 젊고 힘없는 작가는 대행사 직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작가선택권을 쥔 대행사는 고용주로 군림하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미술진흥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일부 대행사들에 의해 쥐락펴락하게 되면서 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어긋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미술품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대행사의 자격 조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누구나 대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있는지, 전문업체로서 안목을 갖추고 있는지, 하자는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미술

장식 응모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아 대행사 난립을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제를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대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신고제 보다 강한 ‘등록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저번 심포지엄에서 ‘허가제’ 를 주장했으나 그럴 경우 경쟁력을 갖춘 대행사를 제한하고 미술진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그보다 약한 ‘등록’ 으로 수정 제안한다. 그것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등록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서류를 내면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발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소정의 등록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에이전트의 기획력이 우수한 경우는 전문성이 발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심경관과 어울리는 미술작품 설치로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미술작가(미술평론가 및 큐레이터 포함)의 경우에도 기획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에 포함시킨다.

자격조건으로는 1)정규대학(4년제) 미술과(미술이론 포함)를 졸업했는지 여부, 2)미술대학은 졸업하지 않았지만 미술 대학원(미술이론 포함)을 졸업했는지 여부, 3)한국회랑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4)미술작품 설치 대행업무를 실제로 5년 이상 해왔는지의 여부, 5)대행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5번은 자격조건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1,2,3,4항 중 한 개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기획대행사를 두는 이유는 적합한 미술품의 설치, 무분별한 대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제어하는 데에 있기에 등록을 필한 기획대행사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조치를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을 때, 2.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 3. 기획대행시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등) 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대행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단순히 미술품장식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둘째 공공시설에 들어서는 명실상부한 공공미술의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는 계획

단계에서, 작가선정, 행정처리, 홍보, 설치 등 모든 영역을 다루어야 하므로 업무가 늘어나고 책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단순 알선의 경우 수수료 폭은 종전보다 낮추되 후자의 경우 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시일에 사업이 종료되는 단순 알선의 경우와 몇 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 기획대행의 경우와는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진행비 및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수료 문제는 미술시장 등에 대한 연구, 해외의 사례 연구, 각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 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가지 언급할 문제는 미술가의 계약자격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의 제도에선 미술가의 자격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아 아무나 미술품을 제작, 설치하게 되어 있다. 물론 건축주와 대행사가 계약을 맺을 때에도 ‘미술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들리는 얘기로는 간판, 석재공장 등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공공미술품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광고시설이나 구조물로는 적합할 수 있겠으나 이런 구조물들이 공공미술품으로 오인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본의 아니게 미술장식제도의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공공조형물을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격요건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가에게만 미술품 제작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건축주든 공공기관이든 계약을 할 경우 미술가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서 허가해준 법인단체(한국미술협회, 민미협, 한국조각가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의 회원으로 하든지 미술대학을 수료하고 3회 이상의 개인전을 한 자로 하든지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 4. 미술작품 사후관리

공공조형물은 실내와 실외에 설치되지만 비교적 건물 바깥에 위치하는 편이 많다. 옥외에 설치되는 미술품에 비해 실내 전시공간속의 미술품은 비교적 보존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일년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 및 조도를 유지하면서 대기오염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조각품의 경우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것은 대기환경(온도, 습도,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중 비나 폭설, 고온, 추위에 시달려야 한다. 특히 “산성눈이나 비, 태양광선,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오염성분들은 항상 조각작품의 재질에 반응하여 조직을 약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작품의 존재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훼손원인이 된다.”<sup>12)</sup> 개방된 공간에 노출된 미술품은 작품재료와 제작방법과 무관하게 “외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극히 불안정한 자연상태의 훼손 환경조건에 놓이게 된다”<sup>13)</sup>는 분석이다.

자연적인 훼손도 있지만 인위적인 훼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사람이 운집한 곳에 놓인 미술품이 그 표적이 된다. 사람들로 인해 시달림을 받거나 그 위에서 장난을 치고 발길로 걷어차는 등 미술품은 점점 훼손되어간다. 어떤 작품 주위는 아예 잡동사니를 쌓아놓거나 관리 소홀로 흥흥한 폐가를 방블케 하는 곳도 있다. 작품제목이나 작가라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명패가 없는 곳이 수두룩하고 오랜 비바람에 시뻘겋게 표면에 녹이 쓸어 보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것은 약간의 정리로도 원상을 회복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것도 있다.

서울시는 구청에서 미술장식품 관리대장을 만들어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조치가 그만하면 모범적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미술품 보존에 관한 일은 사실 민간 건축주가 하기 벅찬 사안으로 미술관이 나서야할 만큼 전문성을 요한다.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관리 및 수복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선진국이 될수록 미술품을 잘 설치하는 일 못지않게 예술품을 잘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

매해 1천여점의 조형물이 세워지고 그중에 상당수를 조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이 작품은 부식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현행법상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토록 하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사후관리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물 사용 승인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12) 강정식, 장영준, “미술품의 과학적 보존 - 야외조각작품의 보존과 복원에 관하여, 『현대미술관연구』 제3집

13) 같은 책

## 5. 심의위원회

공정한 작품심의는 미술장식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심의를 철저히 시행해야 최상의 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작품 설치에 관련된 비리가 심의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미술품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품심의를 철저히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벌써 20년 전에 한 평론가는 “지금 서울의 거리는 새로운 미술품을 설치하느니보다 기왕에 설치된 수준 낮은 작품을 쏙는 일이 중요하다”<sup>14)</sup>고 걱정적으로 토로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거리를 걷다보면 도저히 공공미술품으로 간주할 수 없는 작품들이 눈에 밝힌다. 미술장식품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는 말만큼 가슴 아픈 말도 없다.

이것은 작품심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심의를 요식적으로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공미술품은 미술관안의 미술품과 다르게 원하지 않은 사람과도 조우할 수 있기에 전시공간안의 작품에 비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작가의 창작풍토를 진작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인들의 좀더 나은 삶을 꾸리는 데도 이바지해야 한다. 공공미술품의 설치이해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미술작품의 적합, 부적합성을 가려내는 책임은 심의위원회의 판단결과에 달려있다. 옥석을 잘 골라내야 좋은 미술작품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감상자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게 된다.

한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 2008년 당해년도 11월까지 273점 심의대상 작품 중 179점이 통과되어 통과율이 전체의 66%에 달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철저한 심의로 진위, 예술적 가치, 환경과의 조화, 적합성, 안전성, 도시미관에 끼치는 기여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가가 심의를 할 경우 인맥에 얽혀 아는 사람을 선정하거나 빙빙 도는 회전문처럼 번갈아가며 당선 작가가 되기도 한다. 심의위원이 작가이자 이해당사자가 되는 데서 오는 문제

14) 이경성, 『현대미의 표정』, 예술지식, 1989, p.52

점이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심의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 72.5%의 전문가들이 ‘심의제도’가 미술장식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기여하지 않음’ 55%,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음’ 17.5%)는 평가를 내렸다. 심의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상당히 기여함’ 6%, ‘어느 정도 기여함’ 21.5%) 27.5%에 불과했다. 또 미술장식제도의 시행단계별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항에선 ‘심의’가 문제라는 답변이 48%로 나타났다. 미술장식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건축주의 인식부족’ (6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48%), ‘중개업자의 영리추구’ (44%), ‘작가의 공적 책임감과 역량의 부족’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5)</sup> 이상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장식품 시행에서 심의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심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두어 ‘심의위원 인력풀’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말하자면 어느 건축주라도 별도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지원기구’에 의뢰하면 해당 건축물의 심의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미술을 잘 모르는 건물주가 공정한 작품심의를 받으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심의위원 인력풀’에 위촉할 위원으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작가들을 포함하여 큐레이터나 비평가, 디자이너, 건축, 공간디자이너 등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술장식품의 특성에 맞게 장르별, 지역별, 특성별로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행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작품의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안정성 등을 각각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고장의 미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맥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풍토를 감안할 때 폐단을 낳을 수 있다. 같은 지역의 미술인들끼리 모여 심의를 하다 보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15) 양현미 외, 『건축물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pp.106~113

그러므로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물에게 심의를 위촉해야 하며 이때 ‘공공조형물 기구’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다. 가령 안양시에서 심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의 나머지 지역에서 심의위원을 보냄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미술인들끼리 심의를 하면 답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심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먼 지역에서 심의위원을 초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다. 가령 경기도 수원시에서 심의를 할 경우 전라북도 군산에서 심의위원을 초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심의의 원만한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같은 도에서 심의위원을 추천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이미 풍부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현재대로 해도 되지만 그밖의 시도에서는 적어도 2/3는 외부에서 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 6. 정리

만일 지금의 장식미술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혜택을 제공하려면 이 문제를 지금처럼 민간건축주에게 일임하는 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공공시설, 공공장소에 우수한 미술품을 설치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 비용을 1/100 이상으로 정하고 여기서 공공미술 부담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건축주인 경우 0.7%는 자체 미술장식품에 할애하고 나머지 0.3%는 공공미술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비용을 뺀 전액을 공공미술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이런 경우 공공기관에도 미술품이 들어가고 공공장소에도 미술품을 설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미술장식제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대행사 허가제’와 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무자격자의 난립과 시장왜곡은 도를 넘고 있기에 자격 있는 대행사에게 공공미술품 중개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미술을 본격화할 경우 전문적인 안목을 갖춘 기획, 작가선정이 요망되기에 ‘등록’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심의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작품심의는 미술장식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므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심의위원을 다른 지역

에서 초대할 것과 심의위원의 사후 공개, 그리고 심사평의 공개 등을 고려해볼만하다. 그리고 ‘요식적인 심의’에서 ‘실질적인 심의’로 나가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술작품 사후관리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문제이다. 매해 쏟아져나오는 1천여점,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1만여점의 미술작품이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미술장식품 관리대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떤 경우이든 미술장식 제도가 강화되면 되었지 약화되선 안될 것이다. 1959년 필라델피아가 처음으로 건축물에 미술비용을 포함하는 법을 제정한 이래 미국은 이 법을 굳건하게 지켜왔거나 오히려 강화시켜가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화되고 쪽으로 가고 있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제도의 기술적 부분이야 얼마든지 수정해가면 되겠지만 이 법이 지닌 기본 취지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공공미술품의 문제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인가 ‘예술적 가치’가 우선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적인 체험을 통해 가치 있는 인식을 자극시키며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예술이 지닌 큰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재화로 환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보할 수도 없는 부분임이 틀림없다.



# 공공미술 출연 기금 운영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선의 몇 가지 기본방향 중 하나가 <선택적 기금제> 도입이다. <선택적 기금제>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동기가 미흡한 민간 건축주의 법적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사회문화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무이행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기존의 방식 이외에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미술계 입장에서는 확보된 기금을 활용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미술작품의 사후 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다양한 지원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을 분석해보고,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선에 따른 공공미술 출연 기금의 운영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분석

현재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는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권장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고 1988년 건축법과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면서 전국적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1995년에는 권장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인 미술품 설치건수는 8,580건으로 설치금액은 총 4,800억 원, 참여한 미술작가는 총 2,439명으로 집계되었다.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는 작가, 작품, 건축물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지자체 담당부처의 직접 방문과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차 500건, 2차에 2,502건, 3차에 3,305건 등 구축이 완료된 자료 6,307건과 정보가 불충분 하거나 작품소실 등의 이유로 간단한 기본 자료만을 갖춘 2,273건의 자료를 합쳐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미술 장식품은 총 8,580건이었다. 이 중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와 ‘작가미상’으로 분류된 35건을 제외하고 8,545건으로 작가 2,439명의 작품을 담고 있다.

## 특정 작가의 미술작품 설치 집중도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총 2,439명의 작가 중 20건 이상의 작품을 설치한 작가는 49명으로 전체 작가의 2%에 해당하며, 이들 작가가 전체 작품 8,580건 중 17.5%인 1,498건을 점유하고 있었다. 가장 빈도수가 많은 작가의 경우 82건으로 비올로는 전체의 0.95%에 해당한다. 또한 작품설치건수 1위 작가가 작가별 작품 총액에서도 55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다만 1위 작가의 전체 설치작품 82건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0건에 대한 작품 가격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어 실제 금액은 55억 원보다 더욱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품설치 건수와 작품 총액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작품별 평균 설치가격이 작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

〈표1〉 순위별 작품설치건수 및 작품가격 현황

순위	작품 설치		작품 가격(합계)	비고
	건수	비율(%)		
1	82	0.95	5,543,730,000원	* 작품 가격은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2	76	0.88	5,413,610,500원	
3	63	0.73	4,193,880,000원	
4	51	0.59	2,952,898,000원	
5	48	0.56	2,706,024,000원	
6	47	0.54	3,112,332,600원	
7-1	41	0.48	1,802,806,000원	
7-2	41	0.48	1,195,893,300원	
8	40	0.46	2,158,137,000원	
9-1	39	0.45	1,963,350,000원	
9-2	39	0.45	1,349,285,000원	
10	38	0.44	2,473,864,500원	

## 지역별 특정 작가의 작품 집중도

작가별 지역 내 작품 설치 분포를 위해 지역을 크게 10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작품설치건수가 상위 순위에 속한 작가들은 대부분 서울, 인천/경기지역 등 주로 수도권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25건 내외의 작품을 설치한 작가들의 경우, 설치 지역 분포에 있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한 작가가 미술작품을 설치한 비율이 10%이상(조사대상인 설치건수 상위그룹 49명의 총 설치건수인 1,498건 대비) 차지하고 있는 작가는 22명(조사 대상 상위그룹 49명 대비 44.9%)으로 특정 작가들의 작품 설치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2〉 지역별 전체 작품 수 기준 작가별 설치작품 분포 현황

작품 설치 건수 순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1	37	7.9	30	5.0	4	2.3	7	7.1	0	0	0	0	1	1.6	2	7.4	0	0	1	25
6	11	2.3	17	2.9	6	3.4	6	6.1	0	0	0	0	3	4.8	3	11.1	1	8.3	0	0
7-1	20	4.3	18	3.0	0	0	0	0	0	0	0	0	0	0	1	3.7	2	16.7	0	0
8	11	2.3	24	4.0	3	1.7	0	0	0	0	0	0	1	1.6	0	0	0	0	1	25
9-2	17	3.6	15	2.5	0	0	4	4.0	0	0	2	16.7	0	0	1	3.7	0	0	0	0
10	7	1.5	26	4.4	0	0	1	1.0	0	0	0	0	2	3.2	0	0	2	16.7	0	0
13-2	11	2.3	11	1.8	2	1.1	5	5.1	0	0	1	8.3	0	0	0	0	0	0	1	25
14	7	1.5	4	0.7	5	2.8	5	5.1	0	0	9	75.0	0	0	0	0	0	0	0	0
16-1	0	0	6	1.0	0	0	1	1.0	18	47.4	0	0	2	3.2	0	0	0	0	0	0
18	0	0	0	0	25	14.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3	4	0.9	0	0	19	10.8	0	0	0	0	0	0	1	1.6	0	0	0	0	0	0
19-5	1	0.2	6	1.0	2	1.1	1	1.0	14	36.8	0	0	0	0	0	0	0	0	0	0
20-1	12	2.6	4	0.7	2	1.1	2	2.0	0	0	0	0	2	3.2	0	0	0	0	1	25
21-2	5	1.1	11	1.8	0	0	1	1.0	1	2.6	0	0	2	3.2	0	0	2	16.7	0	0
21-3	0	0	0	0	0	0	22	22.2	0	0	0	0	0	0	0	0	0	0	0	0
21-4	0	0	1	0.2	21	11.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5	0	0	0	0	22	12.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3	0	0	0	0	2	1.1	19	19.2	0	0	0	0	0	0	0	0	0	0	0	0
23-3	4	0.9	4	0.7	2	1.1	1	1.0	0	0	0	0	9	14.3	0	0	0	0	0	0
23-5	1	0.2	2	0.3	1	0.6	0	0	0	0	0	0	2	3.2	14	51.9	0	0	0	0
23-6	3	0.6	3	0.5	0	0	0	0	0	0	0	0	14	22.2	0	0	0	0	0	0
23-8	2	0.4	0	0	18	10.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미술작품 자료 구축 및 관리 현황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작품에 대한 DB구축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전문 관리부서의 부재와 협력 체계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구축된 미술작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1995년도 이전의 경우 미술품 장식제도가 의무화되기 이전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비교적 최근 자료의 경우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5년까지 다양하게 두고 있어 자료수집 과정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의치 않았으며 수집된 자료의 경우도 작품명, 작가, 작품가액 등 누락된 데이터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2007~2008년의 자료들은 온라인상에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미흡으로 이미 설치된 작품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재 2007년 211건, 2008년 140건의 작품만이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 II. 공공미술 출연 기금의 활용

### 1. 전담기구(조직) 운영을 통한 공공미술 진흥 업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미술 진흥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담기구(조직)의 기능은 다음의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해 출연된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 ②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관리
- ③ 공공미술과 관련된 각종 조사, 교육 및 연구
- ④ 시 도지사가 구성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공공미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하는 업무 등이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야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의 업무 지원

현재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 등 광역시는 광역단위에서 도의 경우는 대부분 시, 군, 구 기초단체별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미술작품 설치 현황 분석>에서 나타났듯 지역별 특정 작가의 집중화, 독점화는 지자체가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시, 군, 구별 단위에서 구성할 수 있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한계, 수시로 바뀌는 관련 담당자의 비전문성, 그리고 심의 시 지역적 정서 고려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술,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의위원 बैं크를 만들어 사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심의 건수,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몇 개 권역별로 나누어 좀 더 세부적인 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해 전문가 인력풀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건축물 미술작품 등 사후 보존 관리 지원

1995년부터 의무조항이 된 동 제도를 통해 설치된 미술작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추진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경우 건축주의 사유재산이지만 설치시 법에 의한 강제성, 일반국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작품의 보존, 관리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작품의 철거, 훼손, 분실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건축주에 있으며, 몇몇 지자체의 조례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그러한 절차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위원회(전담 조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작품의 설치연도를 감안하여 지자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작품의 일상적인 관리, 주기적인 보존상태, 보수 또는 복원, 위치 변경 또는 철거 등 작품의 보존관리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보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일상적인 관리는 건축주 또는 미술작품을 중개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예술위원회는 주기적인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보존상태의 점검은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교육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주의 작품 보수, 복원, 위치 변경시 소요되는 재정적인 비용의 경우 출연기금을 활용해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건축물 미술작품의 자료 관리 등 정보서비스 제공

현재 구축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자체와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매년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술작품의 구축 및 관리는 미술작품 관리를 전국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 미술작품 투어, 가이드 맵,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들과 연계한다면 전국 8,500여건에 이르는 미술작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민의 예술향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미술작품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미술작품을 설치할 예정인 건축물에 관한 정보, 에이전트(기획 대행자) 등록 정보, 보존·복원 관리업체 정보, 작품가격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 건축주를 대상으로 미술작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건축물 미술작품 포털사이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건축가, 작가들이 쉽게 검색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운영

기금제 도입을 통해 출연된 기금의 사용 용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으로 출연된 기금의 50% 이상은 16개 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전국단위의 공공미술 지원 사업,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그 외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및 각종 매뉴얼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한다. 16개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국단위의 공공미술 지원 사업은 위원회에서 기존 건축물 미술장식품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대규모 공공미술 사업, 지방이전에 따른 행정 도시,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미술 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사업 추진시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작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관계 분야 전문가의 자문, 컨설팅 제공 등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건축주를 대상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 배포 등과 같은 사업들도 제도 개선 초기에는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연구해 예술성과 공공성이 높은 작품들에 대한 가이드 맵 제공, 투어프로그램 진행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간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제를 실시 연도별로 ‘베스트 10’ 과 ‘위스트 10’ 을 선정해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도 공공미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up>1)</sup>

## 2. 출연 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현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통해 출연될 문예진흥기금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전무하다. 다만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및 건축계 관련 자문회의에서 대부분의 건축주가 자신의 건축물에 작품을 설치하려는 선호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작품가액 중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품 설치를 위한 여러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성을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1)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2009.5.21 개최)’ 서성록 발제문 참조

건축주는 기금 출연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참고로 2005년, 2006년의 작품가액 기준을 통한 전체 미술작품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2005년도 작품가액 기준 작품 설치 건수 및 금액

작품액	건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5천만원 미만	372건	36.5	107억원	13.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64건	35.7	261억원	32.4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86건	18.2	219억원	27.2
1억5천만원 이상	98건	9.6	219억원	27.2
합계	1,020건	100.0	806억원	100.0

\* 122여건은 작품가액이 없음

〈표4〉 2006년도 작품가액 기준 작품 설치 건수 및 금액

작품액	건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5천만원 미만	367건	33.6	107억원	12.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29건	39.3	306억원	35.4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88건	17.2	225억원	26.0
1억5천만원 이상	108건	9.9	227억원	26.2
합계	1,092건	100.0	865억원	100.0

\* 70여건은 작품가액이 없음

16개 시도의 지원은 출연될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의 50% 이상을 지원할 방안이며, 지자체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보존 관리, 에이전트(기획대행자) 관리, 미술작품 자료 수집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자

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16개 시도의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기금과 동일한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마련,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칭펀드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미술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최근 지자체별로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공공미술 진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6개 시도의 지원 비율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통한 시도별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출연 비율, 향후 심의 제도 운영, 보존 관리, 작품 자료 수집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역할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출연 비율은 16개 시도의 작품 설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2006년 16개 시도별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 지역이 200억 내외로 전체 금액 대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부산/대구가 9~10%, 인천, 충북, 충남이 5% 내외, 광주/대전/울산 등은 3% 내외에 그쳤다. 전남과 제주는 1% 내외이다. 다만 5% 미만인 시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 비율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5〉 2005년 2006년 미술장식품 지자체별 설치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005	건수	219	108	57	55	34	49	22	372	26	16	43	15	19	25	77	5	1,142
	금액	8,448	8,574	3,985	5,282	2,833	3,409	2,108	27,583	1,854	1,504	2,754	1,242	1,907	1,512	7,200	366	80,569
	비율	10.5	10.6	4.9	6.6	3.5	4.2	2.6	34.2	2.3	1.9	3.4	1.5	2.4	1.9	8.9	0.5	100.0
2006	건수	162	124	98	66	55	38	47	293	51	39	47	38	22	34	50	18	1,182
	금액	10,036	10,016	7,386	5,031	3,274	3,346	2,985	21,298	3,189	4,149	4,510	3,400	1,333	2,720	3,340	554	86,574
	비율	11.6	11.6	8.5	5.8	3.8	3.9	3.4	24.6	3.7	4.8	5.2	3.9	1.5	3.1	3.9	0.6	100.0

\* 2007년, 2008년 미술장식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

### Ⅲ. 맺음말

이상으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개선방향 가운데 출연기금의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전담 조직이 해야 할 일과 기금의 배분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법제도는 열악한 미술계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외부에서 본 제도를 규제로 인식하고 일부 예술가의 부분적인 문제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 경향은 우려할만한 것이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이 미술계 내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이 개선안을 통해 해소되고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실질적으로 미술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룬 출연기금의 운영방향과 전담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심포지엄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향후 좀 더 세부적인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 개선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  
110-766